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9
----------	-----

제출년월일 : 2017.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법제처에서 통보한 정비과제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21조제1항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나. 위 법에 따르면 협의회는 주민으로 구성되고,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조례에서 평창군수의 인가를 받아 성립하게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없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에 합치하도록 이를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삭제>

나. 규정 삭제에 따른 조 제목 변경(안 제2조)

- (당초) 설치 ⇒ (변경) 구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 1) 입법예고(2017. 8. 24. ~ 9.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설치)”를“(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설치) ①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u></p>	<p><u>제2조(구성)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u></p>

관계법령 발취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연락처	(033) 330 - 4820